

# 독도는 과연 일본 영토였는가?

## - 일본 외무성 「독도 홍보자료」에 대한 비판 -

2008. 4. 16.

### 목 차

---

일본 외무성, 「독도 홍보자료」 발행	1
첨부 <일본 외무성 「독도 홍보자료」에 대한 비판>	4

---

## 일본 외무성, 「독도 홍보자료」 발행

- 일본 외무성은 지난 2월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라는 14쪽 분량의 팸플릿을 만들어 3월 8일부터 홈페이지에 게시
  - 이 홍보자료는 외무성의 공식 입장으로서는 일어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영문판 3가지로 제작됐음
- 일본은 이 팸플릿에서 현재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주요 쟁점을 10가지로 정리, 자국의 입장을 적극 홍보하고 있음

〈표〉 일본 외무성의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

구분	내용
포인트 1	일본은 옛날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포인트 2	한국이 옛날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포인트 3	일본은 울릉도로 건너갈 때의 정박장으로 또한 어채지로 다케시마를 이용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습니다
포인트 4	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습니다만, 다케시마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포인트 5	한국이 자국 주장의 근거로 인용하는 안용복의 진술내용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포인트 6	일본정부는 1905년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여, 다케시마 영유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포인트 7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기초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다케시마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으나 미국은 다케시마가 일본의 관할하에 있다고 해서 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포인트 8	다케시마는 1952년 주일 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일본 영토로 취급되었음은 분명합니다
포인트 9	한국은 다케시마를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중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10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다케시마’는 독도의 일본식 표기인데, 인용문이 아닌 경우에는 ‘독도’로 씀

- 이 자료에는 일본의 다케시마 편입, 안용복 진술에 대한 비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한국의 불법 점거, 독도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주로 일본 측의 일방적인 내용을 싣고 있음
- 일본에게 불리한 1877년 태정관 문서(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인정한 일본의 공식 문서) 등은 누락시키는 등 고의적으로 역사까지 왜곡

##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 되풀이

- 홍보자료에 들어 있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10가지 쟁점은 과거 일본이 주장해온 내용과 차이가 없으나 첨부한 사진과 문헌 및 지도가 1차 자료들이라는 점이 특이함
  - 일본 외무성은 이 자료를 제작하면서 메이지 대학, 돗토리 현립박물관,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요미우리 신문사 등이 제공한 자료를 적극 활용
- 일본이 대외 창구인 외무성 이름으로 홍보책자를 발행한 것은 그 동안 내부적으로 준비해온 성과를 바탕으로 독도 문제를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하려는 전략으로 판단
  - 일본은 지금까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적은 있으나 팸플릿 형태로 발행한 사례는 없었음

## 일본에 불리한 자료 누락 등 역사 왜곡

- 우리나라가 영토의 일부로서 독도를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데다, 역사적 사실 등에 비춰봤을 때 일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모순을 안고 있음
  -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점은 1545년 『세종실록』지리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 등 우리나라 문서뿐만 아니라
  - 1870년 메이지 정부의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 1877년 일본 태정관 지령 등의 일본 문서 등도 증명하고 있음(<일본 홍보 자료에 대한 항목별 비판은 첨부 자료 참조>)

## 독도는 영유권이 확립된 우리나라 영토

- 특히 독도는 일본의 주장과는 달리 국제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기 때문에 국제재판을 통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분쟁의 유무 또는 특정 사안이 재판 가능한 분쟁인가의 여부는 재판기관이 결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임
  - 또한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주장은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안에 대한 정치적 주장을 법적 권리로 만들려는 시도로,
  - 영유권이 확립된 우리나라 영토를 국제 재판할 이유가 없음은 물론 이는 과거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음

## 첨부 <일본 외무성 「독도 홍보자료」에 대한 비판>

### 1. 일본 외무성의 독도 홍보자료

- 일본 외무성의 독도 홍보자료는 모두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 논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독도는 역사적·국제법적 근거에 의해 일본의 고유 영토
  - 한국의 실효적 지배는 근거 없었음
  - 한국의 불법 점거에 일본은 항의해왔음
  -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제의를 한국이 거부함

#### <표-1> 일본 외무성의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

구분	내용
포인트 1	일본은 옛날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포인트 2	한국이 옛날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포인트 3	일본은 울릉도로 건너갈 때의 정박장으로 또한 어채지로 다케시마를 이용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습니다
포인트 4	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습니다만, 다케시마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포인트 5	한국이 자국 주장의 근거로 인용하는 안용복의 진술내용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포인트 6	일본정부는 1905년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여, 다케시마 영유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포인트 7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기초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다케시마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으나 미국은 다케시마가 일본의 관할하에 있다고 해서 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포인트 8	다케시마는 1952년 주일 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일본 영토로 취급되었음은 분명합니다
포인트 9	한국은 다케시마를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중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10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2. 일본의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

### 일본의 주장 1. 일본은 독도를 옛날부터 인지하고 있었다(1, 2)<sup>1)</sup>

- 일본은 우리가 일컫는 ‘독도’라는 명칭에 관하여 ‘마츠시마’로 불리게 된 과정에 대하여 일시적인 혼란은 있었으나 인지의 역사는 오래된 것으로 주장
  - 일본이 인지를 증명하는 것으로 제시한 것은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1779 초판) 외에도 다수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음
- 반면에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독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고 주장
  - 그 예로 『삼국사기』와 『세종실록』지리지, 『신증 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증보 문헌비고』등에 나오는 우산도는 오늘날의 독도가 아니라는 의견 제시
  - 조선 문헌의 우산도에 관한 기술은 오늘날의 독도 실상에 맞지 않으며 안용복의 신빙성 낮은 주장을 인용한 문헌도 있다고 주장
  - 더구나 『신증 동국여지승람』에 첨부된 지도에 우산도는 울릉도와 거의 같은 크기로 그려져 있으므로 실재하지 않은 섬이라고 주장

### 일본의 주장에 대한 비판 1.

#### 일본의 고유 영토론은 성립하지 않는다

- 일본 외무성의 독도영유권 관련 공식 입장은 고유 영토론으로,
  - 독도는 역사적 권원과 국제법적 근거에 의해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미국도 일본의 영유권을 인정한 바 있고,

1) 괄호안 숫자는 일본의 포인트 번호임

- 일본은 한국의 불법점거에 항의해왔지만,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의를 한국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임.
- 일본의 고유 영토론의 핵심은 독도영유권이 17세기 울릉도 도해면허를 받은 이래 확립되었다는 것인데,
  - 17세기 중반 이래 일본의 고유영토였던 독도가 1905년에 돌연 무주지가 되어 선점의 논리로 영유권을 재확인했다는 것은 모순임.
- 결론적으로 일본은 고유 영토론과 시마네현 고시 중 하나만 주장해야 하나
  - 고유 영토론은 일본 학자 나이토 세이추에 의해 이미 부인된 바 있고,
  - 시마네현 고시는 독도가 무주지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국제법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움.
- 나가쿠보의 지도를 소개하면서 사료 가치가 높은 초판 대신 1846년판 사진을 실었는데, 1779년 초판의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는 채색 목판본으로
  - 여기에는 일본 본토와 부속땅을 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조선의 두 섬은 오키국과는 달리 채색되어 있지 않으므로,
  - 이것이 오히려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 외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됨
  - 일본은 한국 지도상의 우산도의 위치를 트집 잡아 독도임을 부정하지만, 일본 고지도에는 울릉도·독도가 아예 표기되지 않은 지도가 수없이 많음

## 일본의 주장에 대한 비판 1.

### 한국 문헌의 ‘우산도’는 독도를 가리킨다

- 일본은 독도 관련 한국측 고문헌의 기록을 거의 다 부정하며 한국이 독도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함

- 일본은 『삼국사기』와 『동국문헌비고』, 『증보 문헌비고』, 「팔도총도」 등의 우산도(독도) 기록을 문체 삼지만,
  - 울릉도 외에 우산도가 따로 있다는 ‘2도’ 의식은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증보 문헌비고』를 비롯한 여러 문헌에 보이며 안용복 사건을 겪으면서 박세당에 이르면 우산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함
- 일본은 한국 문헌상의 우산도를 독도가 아니라고 반박하지만, 한국에서 우산도는 독도를 가리키는 것임
- 일본이 인용한 『여지지』에서 울릉도와 우산도가 동일한 섬이라고 한 것은 일설에 지나지 않는데, 두 섬을 별개의 섬으로 본 본설을 취하지 않고 일설을 취하는 것은 아전인수적인 해석임
- 『신증 동국여지승람』의 부속지도에 울릉도·우산도 위치가 틀린 것은 일종의 회도(繪圖)이기 때문임.
- 회도는 지도와 달리 부정확한데, 16세기의 과학기술을 감안한다면 이는 당시 동해에 두 섬이 있다는 공간인식을 그린 것으로 보아야 함
  - 이를 우산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로 할 수는 없음
  - 조선 시대는 울릉도에 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보다 떨어진 독도에 일부러 가는 일은 드물었기 때문에 현지 답사에 의한 지도 작성이 힘들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음
- 『신증 동국여지승람』에 첨부된 「팔도총도」에 울릉도와 우산도의 위치가 바뀐 것을 가지고 우리 선조들의 독도 인식을 부정하나,
- 정상기의 「동국대전도」(1757) 이후부터는 독도를 울릉도의 동쪽에 정확히 표시하고 있음
  - 오히려 야마무라(山村清助)의 「대일본 분견 신도」(1878) 등에서 보이듯, 일본 측 문헌과 지도에서 명칭과 위치에 대한 혼란은 19세기까지 계속되고 있음



### 일본의 주장 2. 일본은 17세기 중엽에 독도 영유권을 확립했다 (3)

- 일본은 요나고의 주민이 돗토리 번주로부터 울릉도 도해면허를 1618년에 받은 이래 울릉도에 가서 전복과 강치 포획, 대나무 등을 벌채한 것이 독도에 관한 영유권을 확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고 전복을 장군에게 헌상한 것은 이 섬에 대한 독점적 경영이며 막부의 공인을 받은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음
  - 독도가 울릉도로 가는 길목에 있으므로 도중에 정박장 내지 강치 또는 전복을 채취하는 어장으로 이용되었음
- 이 같은 사실이 적어도 일본이 17세기 중엽에는 독도에 관한 영유권을 확립한 것을 말해준다고 주장함
  - 또한 쇄국령이 내려진 1635년에도 이 두 섬에 대한 일본인의 도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외국영토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고 강변하고 있음

### 일본의 주장 3. 울릉도 도항금지와 독도 도항금지는 별개다 (4)

- 울릉도 도항이 금지된 1696년에도 독도 도항은 금지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
  - 1692년 울릉도에서 조업 중이던 일본 어민이 조선 어민과 만나 충돌하고, 이듬해 또다시 만나자 조선인을 일본으로 연행해가는 사건이 발생
  - 그 후 일본이 조선 어민을 송환하고 조선인의 울릉도 도항을 금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교섭 과정에서 결국 막부에 의해 일본인의 도항이 금지되는 것으로 결정
  - 이른바 ‘다케시마 일건(一件)’인데, 일본은 이때 독도에 관한 도항이 금지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본이 독도를 자국령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음

## 일본의 주장에 대한 비판 2.

### 울릉도 도항 금지령에는 당연히 독도도 포함된다

- 일본은 죽도(울릉도)에 대한 도항을 금했지만, 송도(독도)에 대한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이는 독도가 울릉도에 부속하는 섬이므로 도해면허도 부여하지 않은 독도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임
  - 일본에게 독도는 울릉도의 왕복 도중에 바라보거나 들르는 섬이므로, 울릉도 도해가 금지되었는데 독도를 목적지로 하여 도해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음
  - 더구나 일본이 도해면허를 내주어 어로활동을 허가했다는 사실 자체가 울릉도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임
  
- 1695년 막부는 돛토리번에 “다케시마(울릉도)가 언제부터 이나바와 호키국에 부속된 섬인가”를 물은 적이 있는데,
  - 이에 대한 회답에서 돛토리번은 “다케시마(竹島=울릉도)와 마츠시마(松島=독도), 둘 다 이나바와 호키국에 속하지 않는다”고 회답한 사실이 있음
  - 일본 사료에는 ‘다케시마 부근의 마츠시마’, ‘다케시마 내 마츠시마’로 기록되어 있는 데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당시 일본인에게 마츠시마(독도)가 다케시마(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언제나 한 쌍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함

### 일본의 주장에 대한 비판 3.

#### 일본은 태정관 지령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밝혔다

- 메이지 유신 후 일본 정부는 조선에 외무성 관리를 파견, 울릉도(竹島)와 독도(松島)가 조선에 부속하게 된 시말을 조사하게 한 결과,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1870)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받았음
  - 이때 ‘조선에 부속하게 된 시말’이라고 한 것 자체가 조선령임을 인정하는 것인데, 보고서에도 ‘송도(독도)는 죽도(울릉도)의 속도(屬島)’라고 기재하여 조선령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일본은 1876년 지적(地籍)편찬사업에 임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두고 조사·의논한 결과, 두 섬이 일본 영토와 관계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음
  - 1877년 국가 최고기관인 태정관에서 ‘죽도 외 일도 즉 송도가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여 하달
  - 일본은 현재 ‘죽도 외 일도’는 두 개의 울릉도(다줄레/아르고노트)를 가리키며 독도와는 관계가 없다는 억지를 펴고 있으나,
  - 이번 팸플릿에서는 ‘태정관 지령’ 자체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 자국에게 불리한 사료는 홍보자료를 제작하면서 배제한 것으로 판단됨

### 일본의 주장 4. 안용복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5)

- 숙종 시대에 일본에 왔다가 돌아간 안용복은 조선에서 취조를 받는데, 이때의 진술이 한국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음
  - 안용복은 진술에서, 첫 번째 도일 때 에도 막부로부터 서계를 받았으며 1696

년 당시 울릉도에 다수의 일본인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일본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

- 안용복은 막부의 서계를 받은 적이 없고, 1696년 당시에는 이미 울릉도 도항금지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울릉도에는 일본인이 없었다고 반론
- 일본은 안용복의 진술은 법을 어긴 상태에서의 진술이므로 믿을 수가 없는데 한국은 이런 자의 주장을 영유권의 근거로 인용한다고 비판

**일본의 주장에 대한 비판 4.**

**오키섬 사료의 발굴로 안용복 진술의 신빙성은 더 커졌다**

□ 일본은 안용복의 공술 자체를 모두 위증으로 몰아붙였으나 최근 일본에서 발견된 사료가 안용복 공술의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음

- 2005년 5월 일본 오키에서 발견된 안용복 취조기록인 「겐로쿠 9병자년 조선주 착안 한권의 각서(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가 대표적인
- 이 사료로 안용복이 취조에서 일본에서 ‘다케시마(울릉도)·마츠시마(독도)’로 부르는 섬이 조선국 강원도에 속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

□ 안용복이 에도 막부로부터 서계를 받았는데 쓰시마주 태수에게 빼앗겼다고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이 있으나,

- 안용복이 이나바를 에도로 착각한 것임이 새로 밝혀졌으며, 소송을 목적으로 호기로 간 것도 사실임이 드러났음
- 또한 1696년 다시 도일했을 때 당시 일본에는 울릉도 도항금지령이 내려져 있었으므로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일본인을 만났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1월에 내려진 도항금지령이 돛토리에 전해진 것은 8월이고 조선에는 1697년 2월에 전해지므로 1696년 당시 울릉도에 일본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최근 일본 연구자의 연구를 통해 드러났음
- 따라서 안용복의 진술에 일부 과장된 면은 있으나 기록 자체가 허위라는 일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 일본의 주장 5.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 영유권을 재확인하였다 (6)

-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주장
  - 일본이 영토 편입을 도모하게 된 시발은 1900년대 초기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독점하고자 한 나카이 요사부uro가 일본 정부에 영토 편입 및 10년간의 임대를 청원한 것에서 시작
  - 이에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의 의견을 듣고 난 후 1905년 각의 결정으로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의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주장
  - 이 결정은 시마네현 지사에 의해 고시됨과 동시에 당시 신문에도 게재되어 널리 일반에 알려졌다으므로 합법적이라는 것이 일본의 주장
- 일본은 조선이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공포하고 여기 나오는 ‘석도’가 지금의 독도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
  - 일본은 석도가 오늘날의 독도라면 왜 칙령에서 독도라고 하지 않았으며 우산도라는 명칭은 왜 사용하지 않았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
  - 또한 일본은 이 같은 의문이 해소되더라도 칙령 공포를 전후하여 조선의 실효적 지배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한국에 영유권이 없다고 주장

### 일본의 주장에 대한 비판 5.

####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는 무주지 선점의 논리이자 고유 영토론을 포기한 것이다

- 일본이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일본의 영토로 편입했다는 주장은 지금까지 일본이 주장해온 독도 고유 영토론과 모순되고 있음
  - 일본이 강제잡이를 하던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郎)라는 자의 청원을 받아 들여, 일본 정부가 1905년 1월에 이를 각의를 통해 결정을 하였고,
  - 독도가 무인도로서 국제법상 타국이 점령했다고 인정할 만한 형적이 없으므로 시마네 현에 편입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 17세기 중반 이래 일본의 고유영토였던 독도를 1905년에 돌연 무주지로 간주한 것이므로 이것이 영유권의 재확인이라는 것은 모순임
- 또한 독도는 시마네현에 편입되기 이전부터 이미 한국의 고유영토이지 무주지가 아니므로 일본의 영토 편입 결정은 국제법상 무효임
  - 영토 편입을 신청한 나카이 요사부로 역시 독도가 한국령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국 정부에 임대 신청을 할 예정이었음
  - 내무성 역시 초기에는 한국 영토로 의심되는 불모의 땅을 편입하게 되면 외국에게 한국 병합의 야심이 있다고 오해받을 것을 우려했음
  - 일본이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을 관계국인 대한제국에 통보도 안하고 관보에도 공시하지 않은 것은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그러한 경우를 우려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대한제국이 일본의 이러한 조치를 알고 항의하려 하였으나 을사조약에 의해 외교권이 박탈되어 당시에는 가능하지 않았음

## 일본의 주장에 대한 비판 6.

### 대한제국 칙령 41호 ‘석도’는 ‘독도’다

-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 41호에서 관할 구역을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라고 했는데, 여기 나오는 석도가 독도라는 점은 입증이 가능한 사실임
  - 우산도나 독도라 하지 않고 석도라 한 것은 문헌상의 우산도가 울릉도 현지민에게 통용되던 호칭이 아니었으므로 현지인의 호칭대로 불린 데서 연유하는 것임
  - 울릉도에는 당시 어업에 종사하던 전라남도 사람이 많았는데, 이들은 독도를 ‘돌섬’ 혹은 ‘독섬’으로 불렀으며, 이것이 1900년 칙령에 한자로 표기되는 과정에서 ‘석도’로 된 것임
  - 일본은 이런 우리나라의 주장을 인용, 그 의문이 해소되더라도 한국이 실제로 지배한 것이 아니므로 인정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는 석도가 독도일 가능성을 우려한 발언으로 해석됨
- ‘독도’라는 명칭은 울릉군수 심홍택의 보고서로 인해 알려짐
  - ‘독도’라는 명칭의 유래가 1906년 4월 심홍택의 보고서로 알려졌다는 것은 이미 1954년 9월 9일 한일간 교환된 왕복문서에서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독도’명칭이 1904년 일본 군함의 일지에도 나오고 있으므로 1906년 이전에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음
  - 시마네현 고시 당시 일본은 스스로 독도영유권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무주지 선점의 논리로 다시 ‘편입’한 것이고,
  -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에서는 우리의 독도영유권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관할구역과 명칭만을 명시한 것임

**일본의 주장 6.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령으로 인정하였다 (7)**

- 일본은 1951년 서명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해야 할 지역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강조
  - 초안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음을 알게 된 한국이 미국에 항의서한을 보냈으나, 미국은 한국측 주장을 명확히 부정했다고 주장
  - 또한 벤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서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임을 인정한 것이 미국의 결론이었다고 주장

**일본의 주장에 대한 비판 6.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 조항 삭제는 당시 냉전구조의 산물이다.**

- 소련의 원폭 보유,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한국전의 발발 등 미소(美蘇) 대립적인 구도에서, 미국은 일본을 포섭할 필요가 생겼는데 평화조약은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 작성되었음
  - 협상 당시 1947년 3월부터 1949년 11월 미 국무부 초안에서 독도는 한국령으로 포함되어 있다가,
  - 일본의 시볼트 주일 미 정치 고문이 1949년 11월 초안을 문제 삼고 독도가 1905년 이래 일본령이라고 로비한 것이 효과를 거두어, 결국 1952년 최종 조인된 평화조약에서는 빠지게 된 것임
- 평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로 독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놓고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본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고,
  - 1947년 초안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독도가 한국령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던 정황으로 볼 때 연합국은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정했으나 최종 단계에서는 독도관련 사안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일본의 주장 7. 일미행정협정에 의해 미국은 일본 영토인 독도를 미국 폭격 연습장으로 사용하였다 (8)

- 일본은 1952년 미국이 일미행정협정에 의거하여 미국이 독도를 폭격훈련구역으로 사용한 것을 놓고도 미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
  - 연합군 총사령부는 1950년 7월 독도를 미군의 해상 폭격연습지구로 지정했고, 이후 1952년 주일 미군의 사용구역으로 결정되었다고 주장
- 일본은 1950년 7월 연합군 총사령부 각서 (SCAPIN) 2160호로 독도가 미군의 해상 폭격연습지구로 지정되었다고 주장
  - 이어 1952년 7월에 미국이 계속 독도를 훈련장으로 사용하기를 희망함에 따라 일미행정협정에 의해 지정하면서 외무성이 이를 고시
  - 일미간 합동위원회에서 협의되고 주일 미군 사용기지로 결정된 사실이 바로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

### 일본의 주장에 대한 비판 7.

#### SCAPIN 2160호는 영유권과는 관계없는 행정명령에 지나지 않는다

- 미국은 연합군 최고사령부 훈령(SCAPIN) 제677호(1946)를 통해 일본 정부의 행정권 행사가 정지되는 지역에 독도를 포함시켰고,
  - 다시 SCAPIN 제1033호를 통해 일본 선박들을 독도의 12해리 이내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을 볼 때, 미국이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식했던 정황으로 해석됨
- 미일합동위원회가 1953년 5월 19일 독도를 연습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국측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 한국 정부가 독도의 사격장 지정에 항의를 하자, 1953년 2월 27일 독도를 연습장에서 제외한다는 사실을 미 공군 사령관이 공식 통고해 온 것임
- 결국 SCAPIN 2160호는 영유권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행정명령이며, 1951년 이래 한국 항공방공 식별구역(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KADIZ) 내에 독도가 위치하고 있음
- 외국 항공기는 24시간 전 우리 함참에 허가를 요청해야 함을 볼 때, 미일합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독도가 일본령으로 될 수 없었음은 명백한 것임

**일본의 주장에 대한 비판 7.**

**미국의 최종 입장은 독도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데 있다**

- 미국은 SCAPIN을 통해 처음에는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인정하였다가, 나중에는 일본의 독도영유권을 인정하는 듯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때,
  - 미국의 입장은 궁극적으로는 독도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것이며, 추후 이를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음

**일본의 주장 8. 한국은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 (9)**

- 일본은 한국이 1952년 1월 이승만 대통령이 ‘해양주권 선언’을 발표하면서 독도를 불법점거한 데 대하여 엄중 항의했다고 주장
  - 1953년 주일미군 폭격훈련구역에서 해제된 후 한일 양국 어민의 조업이 있었는데, 불법 어업을 하는 한국 어민의 철수를 요청한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한국이 총격을 가했다고 주장
  - 1954년 한국은 독도에 해안경비대 주둔부대를 파견한다고 발표했는데 다시 일본 순시선에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생김으로써 이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주장

- 일본은 또한 한국이 현재도 계속하여 경비대원을 상주시키고 숙사와 감시소, 등대, 접안시설 등을 구축하고 있다고 비판
  - 일본은 이를 우리나라가 독도를 불법 점거한 것으로 보고, 이는 국제법상 아무 근거나 법적 정당성을 지니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
  - 일본은 한국의 이런 행위를 용인하지 않으며, 한국의 조치가 있을 때마다 엄중히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해왔다고 강조

**일본의 주장 8. 한국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10)**

- 일본은 한국의 독도에 대한 일련의 조치에 대하여 누차 항의해왔고,
  -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요청해왔으나, 한국은 1954년에 이 제안을 거부한 이래 현재까지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
- 1954년 한국을 방문했던 벤 플리트는 귀국 보고서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장했었다고 주장
  - 미국은 이 제안을 우리나라에 비공식적으로 제안했으나 한국이 반론했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나와 있다고 주장.

**일본의 주장에 대한 비판 8.**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권 행사는 당연하다**

-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선언과 그에 따른 주권 행사가 국제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은 비판의 여지가 없음
  - 영토 주권을 수호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등대시설과

접안시설, 독도 경비대의 주둔은 모두 합법적인 것임

-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안은 일본의 정치적 주장을 법적 권리로 만들려는 시도로, 영유권이 확립된 우리나라 영토를 국제 재판할 이유가 없음
  - 일본의 식민통치를 종결시키기 위한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선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등은 모두 대한민국의 독립을 이미 승인한 바 있으므로,
  -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제의는 일본의 과거 제국주의 침탈을 정당화하고, 영유권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음